

# 『화엄현담회현기(華嚴懸談會玄記)』 제37권의 역주\* - ‘오교십종(五教十宗)’ 교판에 대한 분석 -

박은영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

## I. 『화엄현담회현기(華嚴懸談會玄記)』 해제

### 1. 주석서로서의 가치

본 논고는 원대(元代)의 화엄학승인 보서(普瑞: ??)가 지은 『화엄현담회현기』 권 제37(X8, 이하 『회현기』)에 대한 역주이다. 이 책은 중국 화엄종의 제4 종조인 청량 징관(淸涼澄觀: 738-839)이 저술한 80권 본 『화엄경』의 주석서인 『화엄경소초』 80권(또는 90권) 가운데 개론 부분(『소초』 1-16권)에 해당하는 「현담」(이하 『화엄현담』 8권)에 대한 후대의 주석서이다. 『화엄현담』에 대한 후대의 주석서로는 요(遼), 송(宋), 일본, 원(元), 조선 후기에 걸쳐서 화엄 학승들에 의해 인기리에 작성되어 모두 10여 종에 달하는데,<sup>1)</sup> 이들 주석서 중에 시기적으로나 분량으로나 종합주석서로서의 위치는 단연 『회현기』 40권이 차지한다. 『회현기』는 요대 선연(鮮演: 1045-1118)의 『화엄경담현결택기(華嚴經談玄決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22S1A5B5A160515 62)

1) 소개된 것 이외에 遼代의 ① 道弼 述, 『演義集玄記』 6卷, ② 思積 集, 『演義鈔玄鏡記』 20卷과 宋代의 ③ 觀復 述, 『華嚴經會解記』 10卷, 日本의 ④ 湛睿 述, 『演義鈔纂釋』 38卷과 科目만을 정리한 遼代의 ⑤ 道弼 述, 『演義逐難科』, ⑥ 思孝 述, 『玄談鈔逐難科』이 더 있다. 이중 ③, ④가 현존한다.

擇記』와 더불어 중세 동아시아의 화엄 연구기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헌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조선 중후기에 화엄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화엄학승인 연담 유일(蓮潭 有一: 1720-1799) 역시 『화엄경현담중현기(華嚴經玄談重玄記)』를 저술했는데, 이는 『회현기』와 『화엄현담』을 함께 주석[私記]한 것이어서, 이 문헌들이 조선 후기 화엄 교학의 중흥기를 이끈 핵심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서지사항

지리산 쌍계사간행 목판본(동대도서관 소장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 판사향: 木板本, \* 발행사향: 智異山: 雙溪寺, [肅宗21(1695)]跋.

\* 형태사항: 4卷 1册(全 40卷 10册): 四周雙邊, 半郭 21.0 x 14.2 cm, 有界, 半葉 10行 20字, 上下中黑口; 30.2 x 19.9 cm. 表題: 會玄記, 序: 康熙乙亥(1695)中秋初吉, 栢庵沙門性聰(朝鮮)書, 跋: 康熙乙亥(1695)初夏, 栢庵沙門性聰跋. 紙質: 楮紙.

조선 중후기 화엄 사상의 중흥을 이끈 백암 성충(1631-1700)은 1681년 전라도 임자도에 표류해온 중국 상선에서 많은 불서(가홍대장경)들을 구하여 복각했는데<sup>2)</sup>, 이때 복각한 책에 『화엄경소초』와 『회현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전통 강원에서 화엄학 강의가 전국적으로 개설되었고, 인악 의침(仁嶽 義沾: 1746-1796)도 이에 관한 『화엄사기(華嚴私記)』를 저술하기에 이른다.

## 3. 『회현기』의 내용구성

『대소』 권수 (T, 35페이지)	『화엄현담』의 과목	『연의초』 권수 (T, 36페이지)	『회현기』 권수 (X, 8페이지)
			권1(90a06~)
	『演義鈔』序(1a03~)	권1(01a03~)	권1(94b08~)
(并序)往復序 권1(503a~)	(1) 명칭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서술함 [總序名意]	권1(01a23~)	권2(96c09~)
(往復)	① 중체를 표방하여 거론함[標舉宗體]	권1(01b11~)	권2(96c09~)
(剖裂)	② 능진(能詮) 경을 별도로 찬탄함[別歎能詮]	권1(02c22~)	권3(103b24~)
(故我)	③ 교주는 생각하기 어려움[教主難思]	권1(03c23~)	권3(107a08~)

2) 유일 술, 2013.7-11.

(湛智)	④ 설법 위기가 주변하고 두루함[設儀周普]	권1(04b08~)	권3(109a04~)
(雖空)	⑤ 말씀이 본말을 포괄해 거둬[言該本末]	권1(06c01~)	권4(116c04~)
(其爲)	⑥ 지취(旨趣)가 현묘하고 미묘함[旨趣玄微]	권1(07b28~)	권5(118b17~)
(若夫)	⑦ 단박에 초월하는 이익을 이룸[成益頓超]	권2(11a11~)	권6(126c20~)
(眞可)	⑧ 광원함을 결론지어 찬탄함[結歎宏遠]	권2(13c01~)	권7(136a06~)
(是以)	⑨ 만나게 됨을 감사하고 경축함[感慶逢遇]	권2(13c22~)	권7(136c04~)
(斯經)	⑩ 명칭과 제목을 간략히 해석함[略釋名題]	권2(14b10~)	권7(138a14~)
(歸命)칠언배울 권1(503b~)	(2) 공경하고 귀의하며 가피를 청함[歸敬請加]	권2(15b12~)	권8(139c23~)
(將釋) 권1(503c~)	(3) 장(章)을 열어 문장을 해설함[開章釋文]	권3(018c11~)	권8(151a24~)
권2(503c10~)	① 『화엄경』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教起因緣]	권3(019a06~)	권8(151c01~)
권2(506c24~)	② 장(藏)과 교(教)와 거둬 대상[藏教所攝]	권5(034c11~)	권15(195a19~)
권2(514a05~)	③ 『화엄경』의 뜻과 이치의 분한[義理分齊]	권10(070b20~)	권28(300b05~)
권3(517c21~)	④ 가르침을 받을 대상 근거[教所被機]	권12(088c04~)	권32(331b23~)
권3(518b09~)	⑤ 교체(教體)의 얕음과 깊음[教體淺深]	권12(089b21~)	권32(335a05~)
권3(521a02~)	⑥ 종취(宗趣)의 국한과 통합[宗趣通局]	권13(099a01~)	권34(354a05~)
권3(523a06~)	⑦ 부류와 품과 회[部類品會]	권15(110a06~)	권38(383c03~)
권3(523c22~)	⑧ 전래하여 번역하는 데에 감통함[傳譯感通]	권15(112c29~)	권38(385a18~)
권3(524b04~)	⑨ 명칭과 제목을 총괄 해석함[總釋名題]	권16(117a06~)	권39(394c04~)
권4(526c28~)	⑩ 경문의 뜻을 별도로 해설함[別解文義]	권16(124a15~)	권40(413a13~)
「世主妙嚴品」 권4(529a06~)	4) 『화엄경』 본문 수문[隨文] 해설		

#### 4. 역주내용의 주요 특징

본 역주는 총 10장(章)으로 구성된 『화엄현담』의 본문 가운데 「제6장, 종취의 공통됨과 국한됨」의 내용을 수문(隨文) 해설하는 형식이다. 불교의 제 부파 각각이 존승하는 종취(宗趣)를 ‘오교십종(五教十宗)’으로 분석하여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는 각 종파의 교리를 판단하고, 부처님의 일대(一代) 사상을 종합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화엄종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오교십종의 교판은 깊은 내용(뒤의 종파일수록 깊음)을 얕은 내용(앞의 종파일수록 얕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관은 『화엄현담』에서 오교십종의 교판(教判)이 필요한 이유는 불교의 최종결론에 해당하는 화엄 사

상을 단공(但空)이나 파상시교(破相始教) 등등 앞의 종과 견주면서 깊은 뜻을 얕은 뜻으로 파악하면 깊고 깊은 『화엄경』의 뜻을 잃게 되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화엄종에서는 '제10 원융구덕종'으로서 자종(自宗)의 위치를 설정해놓고, 앞의 제1종부터 제9종까지 종문(宗門)의 근본 지취(宗趣)의 깊이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이 논리를 완성하고 있다. 보서가 『회현기』에서 보이는 촘촘한 분석을 따라가 보면 증세 동아시아 화엄 사상이 당대(唐代)를 거치면서 핵심 종파로의 자리매김 과정에 세밀하고 치밀한 사상분석과 융합과정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II. 『화엄현담회현기』 제37권의 역주

본 번역문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 한문 원문은 CEBTA 電子佛典(2016 Ver.)을 사용하였고, 교감검색은 일본의 IN-BUDS 내의 SAT 검색시스템과 쌍계사 간행본(이하 쌍계사본)을 사용함.

\* 각주의 底本은 『大日本卍續藏經』본이다. (X. 8, 371b15)에서 X. 8은 『만속장본』의 권수; 371은 페이지; a, b, c는 상, 중, 하단; 15는 줄(행) 수를 의미함.

\* 번역문에 삽입한 과목은 『회현기』 본문에는 없으나, 수문 해설의 형식이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현담과목」을 참조하여 삽입함.

\* 원문과 번역문에 굵은 글씨는 주석대상인 『화엄현담』의 글이다: ( )속 굵은 글씨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역자가 『화엄현담』의 내용을 덧붙인 것임.

\*역주 속 작은 글씨는 세주(細註)임.

『화엄현담회현기(華嚴懸談會玄記)』 권 제37

창산(蒼山) 재광사(再光寺) 비구(比丘) 보서(普瑞)가 모아 편집[纂集]함.

제6장 종취의 공통됨과 국한됨[宗趣通局]<sup>3)</sup>

1) 통종을 해석함[釋通宗](10종)

(1) 아(我)와 법(法)이 모두 있다는 종[我法俱有宗]

(2) 법(法)은 있고 아(我)는 없다는 종[法有我無宗]<sup>4)</sup>

(3) 법은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종[法無去來宗]

[371b15] 鈔三法無去來宗中, 言都有八全一少分者, 一大衆部, 卽窟外結集之大衆也. 或大天分部時, 凡僧多者, 爲大衆部. 二說轉部, 有本云: “雪山<sup>5)</sup>轉部者”, 非也. 以上座部轉居雪山, 云雪山轉部, 此部在前法有我無宗中收, 今正是說轉部也. 此師說有唯一種子, 現在相續, 轉至後世, 故言說轉. 此部本名經量部, 唯依經爲比量, 不依律及對法, 凡所解義, 以經爲證, 名爲經量, 亦說轉也. (然有本鈔: “都有七全一少分.” 無此說轉部. 以根本經部在第一宗中已<sup>6)</sup>收, 則無者爲正. 或約別義, 此宗又攝, 亦無妨也.) 三鷄胤部者, 上古有仙貪欲所逼, 遂染一鷄而生子, 從所生族因名鷄胤, 卽婆羅門中仙人種姓. 今部主其族也, 故以爲名. 『文殊問經』云: “是律主姓也.” 四制多山部者, 制多此云靈廟, 此山<sup>7)</sup>多有制多, 因以立名. 『纂玄記』云: “佛於一世, 初生·成道·轉法輪·般涅槃, 四處皆有靈廟, 此卽一處.” 山有制多, 人依山住, 從山立名, 卽後大天所居處也. (餘如上說.) 五六二部者, 制多山西, 稱曰西山, 旣與大天不和, 因此別住北山, 亦爾制多山北之一山也. 此上三部, 並從所住立名. 七<sup>8)</sup>法藏部者,

3) 『화엄현담』 본문의 10장(章)의 내용 중 제6장에 해당한다. 해제 「내용구성」 참조.

4) (1) 아법구유종(我法俱有宗): ① 독자부, ② 법상부, ③ 현주부, ④ 정량부, ⑤ 밀림산부와 (2) 법유어무종(法有我無宗): ① 일체유부, ② 설산부, ③ 다문부 등 2종의 8부파는 『회현기』 권35, 권36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역주는 10종 가운데 제3종~제10종의 분석에 해당한다. 앞 2종은 참조를 위해 과목으로 표시했다.

5)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6)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7)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8) 底本에는 “九”, 『쌍계사본』 참조 수정.

或名法密部, 部主名也. 卽目連弟子, 目連滅後, 習師所說故也. 然密與藏義意大同, 此師含容正法, 如藏之密故. 亦名爲法護, 護亦防護, 卽密藏義也. 八飲光部者, 上古有仙, 身光明盛, 飲蔽餘光, 令不現故. 今此部主是其苗裔, 故以爲名. 言化地者, 如上已<sup>9)</sup>釋. 言敘雪山<sup>10)</sup>轉云者, 非也. 應云說轉. 言四分律法藏部義者, 梵云曇無德, 此云法藏, 卽四分律主名也. 言僧祇律<sup>11)</sup>大衆部義者, 具云摩訶僧祇, 此云大衆, 此部是總, 以行解虛通, 不生偏執, 順五部所見故. 或云摩訶僧祇云大衆者, 此與大衆部不同, 僧祇大衆卽上座窟內大衆故, 不同窟外大衆<sup>12)</sup>部也. 今詳旣云僧祇律大衆部者, 是大衆部同於僧祇律也. 如上四分律同曇無德法藏部故.

○초, 제3종에서 8부파(部派)는 전체적으로, 1부파는 부분적으로 (모두 똑같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 한 것은 첫째 대중부는 곧 (철엽)굴 밖의 결집 대중이다. 혹은 대천(=마하제바)이 부파를 나눌 때 범승(=성승)이 많은 쪽이 대중부가 된 것이다. 둘째 설전부는 어떤 본에서 “설산전부(雪山轉部)”라고 한 것은 틀린다. 상좌부가 설산으로 이전해서 거주했기 때문에 설산전부라고 한 것인데, 이 부파는 앞(제2) 범유어무종(法有我無宗)에 거뒀졌기 때문에, 지금은 설전부이다. 이 (설전부) 법사가 설하기를 “오직 하나의 종자가 있을 뿐이니 현재(의 법이) 상속해서 후세에 전변하여 이르기 때문에 설전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 부파의 본명은 경량부인데, 오직 경장(經藏)에만 의지해서 비량(比量)하고, 율장(律藏)과 논장[對法]은 의지하지 않았으니, 무릇 이해한 뜻을 경장으로 증명하였으므로 경량부라고 하며 설전부라고도 한다.(그러나 어떤 본 『초』에는 “모두 7부파는 전체적으로, 1부파는 부분적으로”라고 하여 이 설전부가 없으니, 근본 경부가 제1종에 이미 거뒀졌다면 없는 것이 맞다. 혹은 별도의 의미를 준거해서 이 종을 거두는 것도 무방하다.) 셋째 계윤부는 상고 때 어떤 선인이 탐욕이 치밀어 올라 드디어 한 마리 닭과 엮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타고난 종족을 쫓아서 계윤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곧 바라문 가운데 선인 종족이니, 지금 부주(部主)가 그 종족이므로 이로써 이름 붙인 것이다. 『문수문경(文殊問經)』<sup>13)</sup>에서 “이는 율주(律主)의 성이다”라고 하였다. 넷째 제다산부는 제다는 여기 말로 영묘(靈廟)이니, 이 산에 제다가 많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름을 세운 것이다. 『찬현기(纂玄記)』에서 “부처님의 일생에 초생(初生), 성도, 전법륜, 반 열반하신

9)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10)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11)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12)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13) 『文殊師利問經』卷下, 「分部品」第15(T. 14, 501b).

네 곳에 모두 영묘가 있는데, 이것은 그중 한 곳이다.”라고 하였다. 산에 제다가 있었는데 선인이 산을 의지해 머물렀기 때문에 산을 따라서 명칭을 세운 것이니, 곧 대천이 거주하던 곳이다.(나머지는 위의 설과 같다) 다섯째(=서산주부), 여섯째(=북산주부) 두 부과는 제다산의 서쪽을 서산이라고 한 것이니, 대천과의 불화로 인해 따로 거주하게 된 것이다. 북산 또한 그렇다. 제다산의 북쪽 어느 산이다. 이상 세 부과는 나란히 거주한 곳을 따라 명칭을 세운 것이다. 일곱째 법장부는 법밀(法密)이라고도 하니 부주의 이름이다. 곧 목련존자의 제자이니, 목련존자가 멸도한 이후에 법사(師)가 가르친 것을 익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과 장의 뜻이 대동하니, 이 부과의 법사(師)가 정법을 품고 있되 감추기를 은밀히 한 것과 같기 때문이며, 또한 이름이 법호(法護)인데, 호 역시 방호이니 밀장의 뜻이다. 여덟째 음광부는 상고 때 어떤 선인이 몸의 광명이 밝고 성대해서 나머지 빛을 흡수해 덮어버려서 나타나지 않게 했기 때문이니, 지금 이 부주(=가섭존자)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 붙인 것이다. (한 부과는 부분적이라고 말한 것은) 근본 화지부(를 취한 것이다)란 것은 위에서 해석한 것과 같다. “설산전부를 서술해서 이르기”라고 한 것은 틀린다. 응당 설전부라고 해야 한다. 사분율법장부의 뜻이란 말은 범어 담무덕은 여기 말로 법장이니, 사분율주(四分律主)의 이름이다. 승기울 대중부의 뜻이란 말은 갖춰 말하면 마하승기이고, 여기 말로는 대중이니, 이 부과는 총괄이 된다. 수행력과 이해력이 허심통달해서 편파적인 집착을 내지 않고, 5부과의 소견을 따르기 때문이다. 혹 마하승기를 대중이라고 운운한 것은 이는 대중부와는 다르니, 승기대중은 곧 상좌부 내 대중이므로 (칠엽)굴 밖 대중부와는 같지 않다. 지금 살펴보니 이미 승기울 대중부라고 언급했다면 이 대중부는 승기울과 같은 것이다. 사분율이 담무덕 법장부와 똑같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 (4) 현재(법)은 가명과 진실에 통한다는 중[現通假實宗]

[371c22] 鈔說假部者, 此部所說世出世法, 皆通假名及眞實故. 言『成實論』先是數論弟子等者, 此論是訶梨跋摩造, 在僧佉<sup>14)</sup>中已造此論. 言以所造爲能造者, 彼宗以五塵爲能造, 五大爲所造, 卽與我宗能所造倒故. 後入佛法, 此論屬經部攝也. 言三藏云下, 證成經部師是此宗攝也. 言細實而麤假者, 『唯識疏』云: “經部十處(十二處中除意 法也), 麤假細實(極微爲實, 麤色等爲假, 聚細爲麤故假.) 大乘世俗麤實細假,(一切色等皆從種生, 由識變故, 相分收

14) 底本에는 “法”, 『쌍계사본』 참조 수정.

故, 麤實極微但是觀心, 假想分析而有, 故細名假.) 薩婆多等麤細俱實, (極微隨色等處攝, 卽和集色等細從麤攝故) 一說部等麤細俱假. 今當初句, 與說假部義稍同, 故合爲一宗. 言此說假下, 揀之三部異別, 後二家所宗之論, 以釋說假名也. 此從俗諦中皆有假實故, 不同一說部不同眞俗一切皆假, 不同說出世部眞諦唯實俗諦皆假, 故此揀之. 言蘊門中下, 釋成俗諦中有假實也. 若法在五蘊門中攝時, 是實, 若分五蘊爲十二處十八界, (謂開色合心, 爲十二處, 心色俱開, 爲十八界.) 旣開五蘊色心爲界處, 故是假說也. (謂旣開五蘊積聚爲界處故, 界處名假積聚也.)

○초, (1부(部)의 전체적인 견해라는 것은) 설가부요 라는 것은 이 부파가 설한 세간 출세간의 법이 다 가명(假名)과 진실(眞實)에 통하기 때문이다. 『성실론』은 처음에는 수론(數論)의 제자로서 등은 이 『성실론』은 가리말다가 지은 것인데, 상카(=수론)학과에 있으면서 이미 이 『성실론』을 지었다. 소조(所造)를 능조(能造)로 삼았다 는 말은 저 종파는 오진(五塵)으로 능조를 삼고 오대(五大)로 소조를 삼았으니<sup>15)</sup> 곧 우리 (화엄)종의 능조, 소조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에 출가하여 불법에 들어왔으므로 이 『성실론』은 경량부에 거뒀다. 삼장이 이르기를 이라고 말한 아래는 경량부논사가 이 종에 거뒀음을 인증해서 완성한 것이다. 미세한 것은 진실이고 추탁한 것은 가명이라는 말은 『유식론술기』<sup>16)</sup>에서 “경량부에서 십처는 (십이처에서 意處와 法處를 제외한 것이다) 추탁한 것은 가명이며 미세한 것은 진실이라고 하고, (극미는 진실이고 추탁한 색 등은 가명이니, 미세한 것이 모여서 추탁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명이다) 대승 세속제는 추탁한 것은 진실이고 미세한 것은 가명이라고 하며, (일체 색법 등이 모두 종자에서 생긴 것이니, 識의 轉變을 말미암기 때문이고, 相分에 거뒀지기 때문에 추탁한 것은 진실이며, 극미는 다만 관심법으로 가상 분석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것은 가명이다) 살바다부 등은 추탁한 것과 미세한 것이 모두 실제라고 하며, (극미는 색처 등에 거뒀진다. 곧 색 등을 변화시켜 적집한 것이니 미세한 것은 추탁한 것에 거뒀지기 때문이다) 일설부(一說部) 등은 추탁한 것과 미세한 것이 모두 가명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첫 구절에 해당하니, 설가부와 뜻이 조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종으로 합친 것이다. 이 설가부는 이라고 말한 아래는 세 부파가 구별되어 차이 나는 것을 가려내었으니, 뒤의 2가가 중지로 삼은 논리로 설가(說假)란 이름을 해석한 것이다. 이는 속제를 따라 모두 다 가명과 진실이기 때문에 일설부가 진제속제가 모두 다 가명이라고 한 것과는 다르며, 설출세부(說出世部)가 진제는 오직 진실일 뿐이고, 속제는 모두 가명이라고 한 것과는 다르므로 여기서 가

15) 五塵은 色·聲·香·味·觸이며, 五大는 地·水·火·風·空이다.

16) 窺基 撰, 『成唯識論述記』 卷2 (T. 43,267a16).

려낸 것이다. 오온(五蘊)에서라고 말한 아래는 속제에 가명과 진실이 있음을 해석해서 완성한 것이니, 만일 법이 오온의 문에서 거뒀을 때는 진실이고, 만일 오온을 나눠서 십이처와 십팔계로 하면<sup>17)</sup>(말하자면 색법은 펼치고 심법은 합치면 십이처가 되고, 심법과 색법을 다 전개하면 십팔계가 된다.) 이미 오온의 색법과 심법을 전개해서 (십팔)계·(십이)처가 되었기 때문에 가설인 것이다.(말하자면 이미 오온의 積聚를 전개해서 (십팔)계·(십이)처가 되었기 때문에 (십팔)계·(십이)처를 가명적취라고 한다.)

### (5) 속제는 허망하고 진제는 참되다는 종(俗妄眞實宗)

[372a16] 疏世俗是假等者, 此部明世間法從顛倒生, 亦<sup>18)</sup>是虛妄, 故非實有, 悉是假名. 出世之法不從顛倒起, 有道果故. 二空境是眞實, 二<sup>19)</sup>空智亦眞實, 眞實境能生眞實智, 眞實智能通眞實境, 故是實有名出世也. 此約所立爲名, 此分通大乘, 故『鈔』云: “少似『中論』等.”<sup>20)</sup> 謂少似『中論』前半也. 以『中論』四諦品前以空破有, 「四諦品」中以空立有, 今以二空爲眞實, 似前半義也. 或可世俗是妄, 少似‘因緣所生法’, 出世爲眞, 少似我說即是空, 不得全偈, 故云前半. 然此言少似, 卽有少分通於大乘破相始教之義. 或可以彼世俗是妄出世爲實望『中論』前半偈者, 亦不全同故, 但云少似. 以『中論』前二句緣生之法卽空者, 卽世出世法皆盡空也. 今第五宗唯空世間故, 世俗是妄, 不空出世間故, 出世爲實. 故『中論』前半偈中, 唯似其空世間之一分, 故云: “少似及向前也.” 若既全似, 則與大乘何別? 思之.

○소, 세속은 가명(假名)이니, (허망하기 때문이요, 출세간은 위와 반대이다) 등은 이 부파에서는 세간의 법은 전도된 것을 따라 생겨나나니 역시 허망하다. 그러므로 실유가 아니니 모두 다 가명이다. 출세간법은 전도된 것을 따라 생겨나지 않으니 도과(道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공·법공) 2공의 경계는 진실이고 2공의 지혜도 진실이니, 진실 경계가 능히 진실 지혜를 내고, 진실 지혜가 능히 진실 경계에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실유를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주장한 내용을 따라 이름 붙인 것이니, 이것이 대승과 부분적으로 통하므로 『초』에서 “『중론』과 약간 유사하다.” 등이라고 한 것이다. 말하자면 『중론』의 전반 계승과 조금 유사한 것이니, 『중론』 「사제품

17) 십이처: 眼處, 耳處, 鼻處, 舌處, 身處, 意處, 色處, 聲處, 香處, 味處, 觸處, 法處.

십팔계: 십이처+육식(=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18) 底本에는 “智”, 『쌍계사본』 참조 수정.

19) 底本에는 “一”, 『쌍계사본』 참조 수정.

20) 底本에는 등뒤에 『鈔』少似中論等者” 6자가 더 있다. 『쌍계사본』 참조 삭제.

(四諦品)<sup>21)</sup>의 전반은 공으로서 유를 논파하였고, 「사제품」의 중반은 공으로서 유를 세웠는데, 지금은 2공으로서 진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반의 뜻과 유사한 것이다. 혹은 세속은 허망하다고 한 것은 ‘인연으로 생긴 법을’과 조금 유사하고, 출세간은 진실이라고 한 것은 ‘나는 곧 공이라고 한다.’와 약간 유사하다. 계승의 전체가 되지 못했으므로 전반이라고 한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유사하다고 한 것은 곧 대승의 파상시교(破相始教)의 뜻과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혹은 저 세속은 허망하고 출세간은 진실한 것으로서 『중론』의 전반 계승과 비교해 봐도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조금 유사하다고 한 것이다. 『중론』의 전반 두 구절에서 “인연으로 생긴 바의 법을 곧 공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세간·출세간의 법이 모두 다 공한 것이니, 지금 제5종에 선 세간만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은 허망하고, 출세간은 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세간은 진실한 것이다. 『중론』의 전반 계승 중에 세간이 공한 것 일부만하고만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유사하다” 및 “전반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완전히 유사하다면 대승과 어떻게 구별되었는가? 생각해보라.

#### (6) 모든 법은 다만 가명(假名)일 뿐이라는 종(諸法但名宗)

[372b08] 疏一說部者，名即是說，名爲一說，說一假名爾。從所立爲名，前則出世是眞，今則出世亦假名爾。

○소, 일설부는 가명이 곧 설한 것이므로 ‘일설’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니, 가명 하나만을 설했을 뿐이다. 주장한 내용을 따라서 이름 붙였으니 앞에서는 출세간이 진실이고, 여기서는 출세간도 가명일 뿐이다.

[372b10] 鈔既無世間者，檢『論』具<sup>22)</sup>云，“既無有世間。”『探玄記』云：“此亦通於初教之始。”即破相始教中，初入方便。

○초, 이미 세간이 없는데 (어떻게 출세간이 있겠는가?)는 『중론』을 검토하여 갖춰서 말한다면 “이미 세간이 있지 않는데”이다. 『탐현기』<sup>23)</sup>에서 “이것 역시 초교(始教)의 시초와 통한다.”라고 하였으니, 곧 파상시교 가운데 초입 방편이다.

21) 『中論』「觀四諦品」卷24(T. 30,33b15). “衆因緣生法，我說即是無，亦爲是假名，亦是中道義”

22) 底本에는 “應”，『쌍계시본』 참조 수정.

23) 『探玄記』卷1(T. 35,116b20)이다.

(7) 삼성(三性)을 공과 유로 나누는 종[三性空有宗]

[372b12] 鈔應理圓實宗者, 『金光明經鈔』云, “應者合也, 應正道理, 圓滿成實, 非方便說, 顯了義故, 故名應理圓實宗也.” 今以彼雖自爲圓實, 望<sup>24)</sup>後三宗義, 非圓滿故, 改名三性空有宗也.

○초, (제7) 응리원실종은 『금광명경초』에서 “응(應)은 합치되는 것이니, 바른 도리에 합치되어 원만하며 진실을 이룬 것이며, 방편설은 아니니, 요의(了義)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응리원실종’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저 종(=법상종)이 자신을 원만하고 실체라고 여긴다하더라도 뒤의 3종과 비교해보면 원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명해서 ‘삼성공유종’이라고 한 것이다.

(8) 진공(眞空)이라서 현상이 끊어졌다는 종[眞空絕相宗]

[372b16] 疏謂心境兩亡者, 通但空破相之意, 及頓教絕相之意. 言直顯體故者, 唯是頓義, 今以深從淺, 故爲此次. 若『探玄記』不立三性空有宗, 第七名一切皆空宗, 謂大乘初教, 八名眞德不空宗, 九名相想俱絕宗. 今以第九合其第七, 爲第八眞空絕相, 加第七三性空有以當相教, 移彼第八爲今第九, 收義方足.

○소, 말하자면 마음[心]과 경계[境]의 둘을 다 없애서라는 것은 단공파상(但空破相)의 의미와 돈교절상(頓教絕相)의 의미에 통한다. 곧바로 본체를 드러낸다는 말은 오직 돈교만의 뜻이니, 지금은 깊은 것(=돈교)으로써 얕은 것(=파상시교)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된다. 만약 『담현기』라면 ‘삼성공유종’을 세우지 않고, 제7종을 ‘일체개공종’이라고 하였으니, 대승 초교를 말한 것이다. 제8종은 ‘진덕불공종’이라 하고, 제9종은 ‘상상구절중’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선(정관은) 제9종을 제7종과 합해서 제8 ‘진공절상중’이라고 하였고, 제7 ‘삼성공유종’을 추가해서 상교(相教)에 해당시키고, 저기의 제8종을 여기의 제9종(=공유무애중)으로 옮겼으니, 뜻을 거둬들임에 만족스럽다.

24) 底本에는 “妄”, 『쌍계사본』 참조 수정.

(9) 공과 유가 걸림 없다는 종[空有無礙宗]

[372b22] 疏九空有無礙宗者，然約大乘宗中，第七是有，雖云徧計空，此約情執空爾。然依他似有，圓成實有，故爲有也。故下立爲二諦俱有宗，第八卽是空，今第九融取空有，令無礙也。

○소, 제9 공과 유가 걸림 없다는 종은 그러나 대승의 종취(宗趣)에만 한정하면 제7종은 유이니, (삼성 가운데) 변계소집성(徧計所執性)은 공하다고 했더라도, 이는 정식(情識)으로 집착한 것이 공한 것일 뿐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 가운데)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있는 듯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실제로 있는 것이므로 유가 된다. 그러므로 아래(=제7종)로는 '이제(二諦)가 둘 다 있다는 종[二諦俱有宗]'을 세우고, 제8종은 곧 공이다 이며, 지금 제9종에서 공과 유를 융합해 취해서 장애가 없도록 한 것이다.

[372c02] 鈔不壞相故等者，前互融，明空有不異，次雙絕拂空有之相。今正雙拂時，而不壞空有之相，卽遮其斷滅也。言眞如隨緣下，以『疏』中眞如二字揀空宗意，謂既上言互融雙絕而不礙兩存，足顯終教之宗，何必更言眞如耶？故今云：前說空有無礙直據空有而言，若不更說眞如則揀濫不盡，以空有無礙尙濫但空故，故說眞如卽空，空卽眞如。問：但<sup>25)</sup>言眞如，已揀第八宗，何必更云隨緣二字耶？答：爲揀法相故，又云隨緣。問：眞如旣唯隨緣，何成眞如之義？又異但凝然下，答也。唯以隨緣，揀但凝然(第七宗也)，<sup>26)</sup>非無不變，二義雙足，方得無礙。言具恒沙下，復揀空宗，故圭山立空·性十門之異。然西域立性宗，以今空·頓·實圓皆名性宗，今則以義分之，淺深有異。

○초, 상이 무너지지 않는 까닭에 (공이 유에 상즉하지만 유가 없어지지 않으며, 공이 유에 상즉하지만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는 것은 앞에서는 서로 융합한 것이니 공과 유가 다르지 않음을 밝혔고, 그다음은 쌍으로 끊은 것이니 공·유의 상을 털어낸 것이며, 지금은 쌍으로 털어버리면서도 공·유의 상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니, 곧 단멸임을 차단한 것이다. 진여(眞如)가 연을 따른다고 말한 아래는 『소』에서 '진여' 두 글자는 공종의 뜻과 가려낸 것이니, 말하자면 이미 위에서 서로 융섭하고 쌍으로 끊되, 둘 다 존재함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종교(終教)의 종취가 충분히 드러날 텐데, 하필이면 또다시 진여를 언급하는가? 하므로, 지금 말하기를, '이전에 언급한 공과 유가 걸림 없음은'

25) 底本에는 “就”，『쌍계사본』 참조 수정.

26) 底本에는 “第七宗也”가 본문으로 되어 있다. 『쌍계사본』 참조 細註로 수정.

공장 공과 유를 들어서 말했으니 만약 다시 진여를 설하지 않는다면 혼동을 가려내기  
에 부진하다. 공과 유가 걸림 없음이 오히려 다만 공함(但空)과 혼동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진여가 곧 공하며 공이 곧 진여이다라고 한 것이다. 묻는다. 진여만을 말해도  
벌써 제8종과 가려질 텐데, 하필이면 또다시 수연(隨緣) 두 지를 말했는가? 답한다. 법  
상종과 가려내기 위한 연고로 수연을 말한 것이다. 묻는다. 진여가 오직 연을 따를(隨  
緣)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여의 뜻을 이루겠는가? 또 응연(凝然)만인 것과는 다르  
다고 한 아래는 답이다. 수연으로써 응연(=불변)만인 것(제7종이다)과 가려낸 것이었을  
뿐, 불변(不變)이 없는 것은 아니다. 두 뜻이 다 만족이 되어야 비로소 걸림 없을 수 있  
다. 항하수(=괘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덕을 갖추었다고 한 아래는 또다시 공종과 가려  
낸 것이다. 그러므로 규산(=규봉)이 공종과 성종의 열 가지 차이를 세운 것이다. 서역  
(=인도)에서 세운 성종은 지금의 공교, 돈교, 실교, 원교 모두를 성종으로 삼았지만, 지  
금은 뜻으로써 나뉘었으니 얕고 깊음에 차이가 있다.

### 3. 헤아려서 가리다[料揀]

#### 1) 십종(十宗)을 통틀어 가리다[通料揀十宗](5)

##### (1) 얕고 깊음을 통틀어 밝힌다[通明淺深]

[372c16] 鈔今迴第七爲第八等者, 正明立意, 以賢首『探玄』所立, 多順於彼, 以第七名一  
切皆空, 第八名眞德不空, 九名相想俱絶, 雖七始八終九頓有異, 七八二宗皆依彼次, 但名  
有異, 以釋第八義云: “約奘師持法輪中, 說三性及眞如不空理等, 以此爲終教.” 然與彼應  
理圓實之義有濫故, 今欲反彼所立<sup>27)</sup>, 以彼七爲第八, 彼八爲第七, 却加第九融彼七八, 方  
順法性故. 問: 賢首順彼八宗, 何有玄妙? 答: 但以後二宗超之爾, 今有三宗超勝, 以第八中  
有頓義故. 言如前西域者, 前『鈔』云, “說假有故爲第二時, 卽此第七宗, 顯理至空, 會緣相  
盡故<sup>28)</sup>爲第三時, 卽此第八宗等.” 言符法性者, 如前四不了皆歸法相, 四了皆歸法性, 故迴  
彼七八也.

○초, 지금은 제7종을 되돌려서 제8종으로 삼으며 (제8종을 제7종으로 삼았느니) 라는  
것은 세운 뜻을 바로 밝힌 것이다. 현수(賢首)가 『탐현기』에서 세운 것은 저 (대승법사)

27) 底本에는 “立+故”, 『쌍계사본』 참조 “故” 삭제.

28)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를 대부분 받아들여<sup>29)</sup> 제7종을 ‘일체가 모두 공한 종[一切皆空宗]’이라고 하고, 제8종을 ‘진덕은 공하지 않은 종[眞德不空宗]’이라고 하며, 제9종을 ‘현상과 생각이 모두 끊어진 종[相想俱絕宗]’이라고 하였다. 비록 제7종은 시교(始教), 제8종은 종교(終教), 제9종은 돈교(頓教)라는 차이가 있지만 제7종과 제8종의 둘은 모두 그의 순서에 의지했으므로 이름만 다르니, 제8종의 뜻을 해석해서 “현장법사의 지법륜(持法輪) 중에 (요의를 드러내어) 설한 삼성(三性)과 진여·불공의 이치 등을 기준 잡아서 이로써 종교(終教)를 삼았다.”<sup>30)</sup>고 했지만, 저기의 ‘우리원실종’의 뜻과 혼동됨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그(=현수)가 세운 것을 뒤바꿔서 저기의 제7종으로서 제8종을 삼고, 저기의 제8종으로서 제7종을 삼았으며, 다시 제9종을 추가하여 저기의 제7종과 제8종을 융합해야 비로소 법성에 수순하기 때문이다.<sup>31)</sup> 묻는다. 현수가 저기의 8종을 따랐는데 무슨 현묘함이 있는가? 답한다. 저 (대승법사)는 다만 뒤의 2종만이 아주 수승할 뿐이고, 지금(『탐현기』)은 3종이 아주 수승하다. 제8종에 돈교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역(=인도)을 (밝힌 가운데 법성종과 법상종이 차이와) 같다는 말은 앞의 『초』에서 “가유(假有)를 설했기 때문에 제2시가 되니 곧 제7종이고, 이치가 지극히 공함을 드러냄과 수연의 상을 회통하여 다했으므로 제3시가 되니 곧 제8종이다” 등이라고 하였다.<sup>32)</sup> 법성종에 부합하므로 (뒤에 제9종과 제10종의 2종을 더하여 깊음을 드러냈다) 는 말은 앞의 네 가지 ‘불요의’는 모두 법상종으로 돌아가고, 네 가지 ‘요의’는 법성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기의 제7종과 제8종을 뒤바꾼 것이다.

## (2) 대승과 소승을 구분한다[大小乘料揀]

[373a05] 鈔然五六立在小乘等者, 第五宗立說出世部, 第六宗立在一說部, 前『鈔』釋此二宗, 皆引『中論』明通大乘. 故『探玄記』第一并『教義』云: “此通初教之始.” 問: 若云此立在小乘, 義通大乘<sup>33)</sup>者, 第三宗中亦應通大乘, 以大乘亦說過未是無, 現在是有故. 第四宗

29) 『大乘百法明門論解』卷上(T. 44, 4c15)에서 규기법사가 세운 8종은 제1종부터 제6종까지는 현수와 징관과 완전히 같으며, 제7종은 勝義俱空宗, 제8종은 應理圓實宗이다.

30) 『教義分齊章』卷1(T. 45, 481a): 三名持法輪, 謂於後時於大乘中顯了意說三性及眞如不空理等.

31) 규기: 78종은 法性宗/法相宗 vs 청량: 789/10종은 法相宗/無相宗/法性宗

현수: 제7종 一切皆空宗, 제8종 眞德不空宗, 제9종 相想俱絕宗, 제10종 圓融具德宗

청량: 제7종 三性空有宗, 제8종 眞空絕相宗, 제9종 空有無礙宗, 제10종 圓融具德宗

청량: 제7종 二諦俱有宗, 제8종 二諦雙絕宗, 제9종 二諦無礙宗, 제10종 二諦無盡宗

32) 『演義鈔』卷7(T. 36, 53c)이다.

33) 底本에는 “小”, 『쌍계사본』 참조 수정.

中亦應通大乘，現在色心等爲實，從自種子而生起故，不相應行爲假，依色心分位假建立故，何獨五六二宗耶？答：第三宗現在爲有，第四宗現在之實，皆離識實有故，不通大乘。『疏』約此義，故不說之。或可與五六義齊，『疏』舉一隅，令准知之。

① 초, 그러나 제5종과 제6종이 소승에서 세워졌으나 (뜻은 대승에 통한다)라는 것은 제5종은 설출세부에서 세웠고, 제6종은 일설부에서 세웠다. 앞의 『초』에서 이 2종을 해석하되, 모두 『중론』을 인용하여 대승에 통함을 밝혔다. 그러므로 『담현기』 권 제1<sup>34)</sup>과 『교의분제장』에서 “이것은 초교의 시초에 통한다.”고 한 것이다. 묻는다. 만약 이것이 소승에서 세운 것이지만 뜻은 대승에 통한다고 한다면 제3종도 역시 대승에 통해야 할 것이니, 대승에서도 과거와 미래는 없고 현재는 있다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제4종도 역시 대승에 통해야 할 것이니, 현재 색법과 심법 등은 진실이니 종자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며, 불상응행(법)은 가명이니 색법과 심법의 분위기를 의지해서 가명으로 건립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제5종과 제6종뿐인가? 답한다. 제3종이 (법이) 현재는 있다고 한 것과 제4종이 현재는 진실이라고 한 것은 모두 식을 여의고 실제로 있다는 것이므로 대승에 통하지 않는다. 『소』는 이 뜻을 준거했으므로 설하지 않은 것이다. 혹은 제5종, 제6종과 더불어 뜻이 가지런하므로 『소』에서 한 귀퉁이를 거론하여 준례해서 알게 했다는 것도 된다.

### (3) 권교(權敎)와 실교(實敎)로써 구분한다[權實料揀]

[373a15] 疏七即法相等者，然准『起信疏』有五宗；一隨相法執宗，即小乘諸師依『阿含』等經立，造諸部小乘等論。二真空無相宗，即龍樹·提婆依『般若』等經立，造『中觀』等論。三唯識法相宗，即無著·天親依『解深密』等經立，造『唯識』等論。四如來藏緣起宗，即馬鳴·堅慧等依『楞伽』等經立，造『起信』等論。五圓融具德宗，即『華嚴經』天親菩薩造『十地論』，立六相圓融義。初一即此前六宗，二三即此八七二宗，四五即此後二宗也。然法相猶存假名，故定是權。無相有二；若緣生即空，平等一味故，是頓實。若但明空，不顯不空故，是破相之權。『起信疏』以頓實從在破相權中，故居唯識相宗前，唯識明中道故。今清涼以破相權從在頓實之中，會緣相盡，故居法相之後。故次科云八即頓教者，隱破相之義不言也。

① 소, 제7종은 법상종이요, (제8종은 무상종이요, 제9종은 법성종이다) 등은 그러나 『대승기신론소』를 준거하면 5종이 있으니, 첫째는 수상법집종(隨相法執宗)이니, 소승의 여러

34) 『探玄記』卷1(T. 35,116b), 『教義分齊章』卷1(T. 45,482a)이다.

논사가 『아함경』 등을 의지해 세워 제부의 『소승론』 등을 지은 것이요, 둘째는 진공무상종이니, 용수보살과 (마하)제바가 『반야경』 등을 의지해 세워 『중관론』 등을 지은 것이요, 셋째는 유식법상종이니, 무착과 천친이 『해심밀경』 등을 의지해 세워 『유식론』 등을 지은 것이요, 넷째는 여래연기종이니, 마명과 견혜 등이 『능가경』 등을 의지해 세워 『대승기신론』 등을 지은 것이요, 다섯째는 원융구덕종이니, 『화엄경』이다. 천친 보살이 『십지론』을 지어 육상원융(六相圓融)의 뜻을 세웠다. 첫째 종은 여기의 앞의 6종이고, 둘째, 셋째 종은 여기의 제7종, 제8종의 2종이고, 넷째, 다섯째 종은 여기의 뒤의 2종이다. 그러나 법상종은 여전히 가명을 두었기 때문에 결정코 권교이다. 무상종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인연소생(因緣所生)은 곧 공한 것이니 평등하여 일미인 까닭이라고 하면 돈교실교[頓實]요, 공(空)만을 밝히고 불공(不空)을 드러내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면 파상권교(破相權教)이다. 『대승기신론소』에서는 돈교실교가 파상권교를 뒤따라 있었기 때문에, 유식상종(唯識相宗)의 앞에 자리한 것이니 『유식론』에서 중도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청량은 파상권교가 돈교실교를 뒤따라 있으니, 인연소생의 상을 회통하여 다했기 때문에 법상종의 뒤에 자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과단에서 제 8종은 돈교라고 한 것은 파상의 뜻은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 (4) 오교(五教)로써 구분한다[以五教料揀]

[373b05] 鈔以五教料揀者, 此約宗教相當之處配之, 不必全取教之次第也. 問: 若爾, 應頓教淺於終教, 以前云前前淺後後深故. 答: 真空絕相雖是頓教, 然亦通始教, 但從多分及隱始義, 此配爲頓也. 故清涼云: “況復宗者從多分說.” 今亦多分, 故配於頓, 前淺後深, 未爽通理.

○초, 5교로서 헤아려 가린다고 한 것은 이것은 종(宗)과 교(教)가 해당되는 곳에 한정해서 배치한 것이니, 교의 차례를 전부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응당 (제4교인) 돈교가 (제3교인) 종교보다 친근할 것이니, 이전에 앞의 앞일수록 친근(淺近)하고 뒤의 뒤일수록 심심(甚深)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답한다. 진공절상종이 돈교이긴 하지만 시교에도 통한다. 다만 다분의 설을 따랐고 시교의 뜻은 감춰져 있어서 이를 돈교에 배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청량이 “하물며 또다시 종(宗)은 다분 설을 따른 것이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지금도 다분(多分)의 설이기 때문에 돈교에 배치하였으니, 앞(종)은 친근하고 뒤(종)는 심심한 것이어서 통리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5) 이제(二諦)로써 구분한다(二諦料揀)

[373b11] 鈔卽清辯菩薩所造者, 『西域記』云: “清辯論師外示僧佉之服, 內弘龍猛之宗, 欲與護法論議, 清辯誓不空見菩提樹, 見當作佛. 護法無暇離菩提樹故, 不能相見論議. 乃云非慈氏成佛, 誰決我疑. 於觀音像前, 誦隨心陀羅尼, 絕食飲水三歲, 菩薩現曰: 何志? 曰: ‘留身待見慈氏.’(云云如前已述.)” 其『掌珍論』有二卷, 唯釋此二量故. 言謂立量<sup>35)</sup>云等者, 『百法慈恩疏』云: “彼勝義諦中, 有爲無爲二俱是空, 第一量云, 諸有爲眞性故空, 從緣故如幻事.”(『明鈔』云: “爲遮犯世間相違過故, 以諸有爲, 學者世間非學者<sup>36)</sup>世間, 皆許有故. 諸無爲法, 學者世間許是有故, 若不揀之, 故成此過. 今言眞性, 依勝義諦, 不依世間, 故無此過. 初量應云: 眞性有爲前陳<sup>37)</sup>, 定是空後說, 前陳後說互相差別, 不相離性, 合以爲宗, 因云緣生, 如幻事等喻. 問: 眞性是勝義者, 世俗勝義其相如何? 答: 眞性義諦一切都空, 世俗諦中可有色心修證等法. 如『金剛經』凡所有相皆是虛妄’是世俗諦, ‘諸相非相則見如來’是勝義相. 問: 此應有自教相違過, 以違諸教不空義故. 如『善戒經』等云: ‘有爲無爲名之爲有, 我及我所名之爲無等.’ 答: 我亦有教如前所引. 又問: 應有自語相違過, 謂吾宗言眞性表依勝義, 汝宗勝義諸法都無, 復言有爲乃是有義. 雖『因明論<sup>38)</sup>』似宗之中無此有法, 自語相違之過, 於理既乖, 亦是過也. 答: 應知眞性之言爲防過故, 該通二量, 但遠指初過總宗<sup>39)</sup>, 非正是宗: 有法, 意先指云, 我依眞性立有爲, 是有法, 定空故宗. 或欲顯示無過道理故, 故<sup>40)</sup>無違也. 故應立量云, 有爲是有法, 依眞性皆空, 故宗便無過也. 故『掌珍論』云: ‘且如眼處一種有爲, 就勝義辯<sup>41)</sup>其體空’等.”)

○초, 『대승장진론』은 청변(淸辯)보살이 지은 것이라는 것은 『대당서역기』<sup>42)</sup>에서 “청변논사가 밖으론 상카<sup>43)</sup>의 옷을 보이고, 안으론 용맹(공)종을 넓혔다. 호법논사와 논의하려 할 적에 청변보살은 ‘맹세코 보리수를 공연스레 보지는 않을 것이니, 보게 된다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호법보살은 보리수에서 떠날 여가가 없었기 때문

35) 底本 및 『쌍계사본』에는 없음, 『演義鈔』 참조 보충.

36)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37) 底本에는 “揀”, 『쌍계사본』 참조 수정.

38) 底本에는 “法”, 『쌍계사본』 참조 수정.

39) 底本에는 “示”, 『쌍계사본』 참조 수정.

40)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41)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42) 『大唐西域記』卷10(T. 51,930c28)을 요약 인용한 것이다.

43) 유일의 『懸談記』(p.389)에 의하면, 상카는 ‘아상카(asankha)’의 줄임말로써 무착을 의미한다고 보고, ‘밖으로 무착의 상종을 보이고, 안으로 용맹의 공종을 넓혔다.’라고 보았다.

에 상견하여 논의하진 못했다. 이에 ‘자씨(미륵)불이 성불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내 의심을 풀어 줄까?’ 하고는 관음상 앞에서 수심(隨心) 다라니를 외우면서 음식을 끊고 물만 마시기를 삼 년 동안 하자, 보살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려 하는가?’ 물으니 ‘몸이 있을 때 자씨(미륵)불을 친견하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운운한 것은 전에 이미 서술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대승장진론』<sup>44)</sup>은 2권이 있는데, 오직 이 2량(量)(=현량 비량)만을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입량해서 말하기를 등이라고 한 것은 『백법자은소』<sup>45)</sup>에서 말했다. “저기는 승의제에 유위법과 무위법이 둘 다 공한 것이니, 첫 번째 입량(立量)에서 ‘모든 유위법은 진성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니, 연을 따르기 때문이다. 마치 마술사와 같다.’라고 하였다.”(『인명초』<sup>46)</sup>에서 이르길, “세간상위과실<sup>47)</sup>을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 모든 유위법은 학자세간과 비학자세간 모두에서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며, 모든 무위법은 학자세간에서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려내지 않는다면 이 과실을 이루겠지만, 지금은 진성을 말해서 승의제를 의지했고 세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실이 없다. 첫 번째 입량에서 ‘진성은 유위이다.’라고 한 것은 앞선 진술(前陳)이고, ‘결정코 공한 것이 다’라고 한 것은 후속 설명(後說)이니, 앞선 진술(有法)과 후속 설명(宗法)이 서로 차별되지만 서로 성을 여의지 않으므로 합쳐서 중법(=주장)을 삼았고, 유법(=주제)으로는 ‘연으로 발생한다’라고 한 것이고, ‘마치 마술사와 같다’라고 한 등은 비유이다. 묻는다. 진성이 승의라면 세간과 승의는 그 모습이 어떤가? 답한다. 진성승의제는 일체가 모두 공이고, 세간승의제는 색心和 修證 등의 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 ‘존재하는 바의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한 것은 세속제이고, ‘모든 현상이 현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한 것은 승의상이다. 묻는다. 이는 마땅히 自宗의 교리와 상위한 과실이니, 여러 교리의 不空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계경』 등에서 ‘유위와 무위는 유이고, 我와 我所는 무이다’ 등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답한다. 나 역시 교리가 있으니,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 묻는다. 응당 자종의 설명과 상위한 과실이 있게 되니, 말하자면 우리 종은 진성은 승의제를 의지해서 표방하였고, 그대 종은 승의는 제법이 모두 없다 하고서 다시 유위를 말한 것은 바로 있다는 뜻이다. 『인명론』의 유사입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법이 없으니 자어상위과실이며, 이치에도 이미 어긋나기 때문에 역시 과실이다. 답한다.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진성이란 말은 과실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량에 통한다. 다만 저 멀리 첫 번째 (현량상위)과실의 총체적 주장(總宗)을

44) 清辯 造, 玄奘 譯, 『大乘掌珍論』(T. 30,268a)이다.

45) 『大乘百法明門論解』 卷上.

46) 窺基 撰, 『因明入正理論疏』 卷中(T. 44,115a)을 요약 인용하고 있다. 아래 단락도 동일하다.

47) 이 과실에는 ① 현량상위과실, ② 비량상위과실, ③ 자교상위과실, ④ 세간상위과실, ⑤ 자어상위과실의 5종이 있다.

가리킨 것이지, 정식 宗法과 有法은 아니다. 뜻으로 먼저 가리켜 말해서 우리 종이 ‘진성을 의지하여 유위법을 세웠다’라고 한 것은 유법이고, ‘결정코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는 중법이다. 혹은 과실이 없는 도리를 현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긋남이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비량을 세워서 말하길 ‘유위법이다’라고 한 것은 유법이고, ‘진성을 의지해서 모두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중법이니, 역시 과실이 없다. 그러므로 『대승장진론』에서 ‘우선 저 眼處 일종의 유위법으로써 승의제에 나아가 체성이 공한 것임을 변별했다.’<sup>48)</sup> 등이라고 한 것이다.”)

[373c05] ▲言此中因喻前却者, 三支次第先宗·次因·後喻. 今頌中先宗·次喻·後因, 故云前却.(却猶後也.) 或是譯者迴文不盡故. 言二無爲比量下, 『百法疏』云: “諸無爲法眞性故非實, 以不起故猶如空華.” 『明鈔』云: “揀過如上.” 又此後量元依勝義諦立, 不同前量. 或准前量理亦無違. 因云不起故, 謂本不生起. 諸不起者皆定無有實, 喻如空華. 『掌珍論』云: “不說遮止即不立異喻”(然准『明鈔』, 二量皆有自教相違失, 今以自亦有教故不爲失也. 彼雖以此宗之教爲非了, 而此宗亦以彼教爲非了故. 如前西域四不了皆歸法相宗也. 故二量皆眞能立亦眞能破, 況顯是『楞嚴經』文, 豈爲似量耶? 故護法菩薩所造『廣百論』第七中亦云: ‘諸有爲法隨緣生故, 猶如幻事, 非實有體. 諸無爲法亦非實有, 以不生故, 譬似龜毛.’ 明知造論之師情無去取者也.) 鈔卽『般若三論中一分之義下, 此言般若乃指諸部『般若經』爾, 三卽中喻·百喻·門也. 對前『深密』瑜伽爾. 言故有言下, 彈責他人之言也. 此是法相宗破學龍猛(依『契法師傳』云: ‘正名龍猛, 舊云龍樹.’) 宗失意之者, 非破龍猛宗, 不爾何用更加學字? 今清涼言: “斯言可怖者”, 亦遮學法相宗, 恐執此言, 破龍猛宗也.

▲이 중에서 이유[因]와 비유[喻]는 앞뒤가 바뀌었으며 이라는 말은 3지(支)의 순서가 처음은 중법(宗法)이고, 다음은 이유[因]이며, 뒤가 비유[喻]인데, 지금 계송에서는 처음은 중법이고, 다음은 비유이며, 뒤가 이유였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다(却是 뒤와 같다)’라고 말한 것이다. 혹은 번역자가 번역한 문장이 부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무위비량이라고 말한 아래는 『백법소』에서 “모든 무위법은 진성이기 때문에 실(實)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니 마치 허공 꽃과 같다.”라고 하였다. 『인명초』에서 “과실을 가린 것이 위와 같다.”라고 하였다. 또 이 후량(=무위비량)은 원래 승의제를 의지해서 세웠으니 전량과 같지 않고, 혹 전량(=유위비량)을 준례해도 이치가 또한 어긋남이 없다. 이유[因]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본래 생겨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모든 생겨나지 않는 것은 다 결정코 실체가 없는 것이니 비유하면 마치 허공

48) 『大乘掌珍論』卷上(T. 30,268c)이다.

꽃과 같다. 『대승장진론』에서 “막는 것을 설하지 않았는지라, 곧 다른 비유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명초』를 준거해보면, 2량이 모두 자교상위과실이 있지만, 지금은 자기의 종에도 교리가 있는지라 과실이 되지 않는다. 저 종이 비록 이 종의 교리를 불요의(不了義)라고 여기지만 우리 종도 역시 저의 교리를 불요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앞서 서역(=인도)의 네 가지 불요의는 모두 범상종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2량이 모두 참 能立(=주장)이며 참 能破인데, 하물며 모두가 『능엄경』의 글이니, 어찌 유사 입량이겠는가? 그러므로 호법보살이 지은 『광백론(廣百論)』 권 제7에서도 “모든 유위법은 緣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마술사(幻師)와 같아서 실체가 없으며, 모든 무위법도 역시 實有가 아니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거북이의 털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분명히 알라. 논의 저지는 情識으로 버리거나 취하거나 함이 없는 자이다) 『초』 즉 『반야경』과 삼론 중에 일부분의 뜻 아래는 여기서 말한 반야는 제부 『반야경』을 가리키고, 삼론은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니, 앞의 『해심 밀경』과 『유가사지론』에 상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용맹종을 배웠으되 악취 공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라고 한 아래는 타인의 말을 질책한 것이니, 이것은 범상종에서 용맹종을 (『현장법사전』에 의하면 “정식 이름이 용맹이니 옛말로로는 용수이다.”라고 하였다) 배웠으되, 뜻을 놓친 자를 논파한 것이지 용맹종을 논파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다시 ‘배웠으되[學]’ 글자를 추가했겠는가. 지금 청량이 “이 말이 두렵다”라고 한 것은 역시 범상종에서 이 말에 집착해서 용맹종을 논파할까 봐 막은 것이다.

[373c21] ▲鈔即眞不礙俗下, 如性相對辨中已釋. 然必融於前下, 如圓教具前四教故. 其第十一宗即第十圓融具德之宗, 非是諸宗所競, 故『疏』不言. 圭峰云: “十宗皆佛滅後, 弘顯佛經, 承習各異, 遂各爲一宗.”

○초, 곧 진(眞)이 속(俗)에 걸리지 않으며 아래는 성종과 상종을 비교할 때 이미 해석했다. 그러나 반드시 앞을 융섭한다 아래는 저 (제5) 원교가 앞의 4교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제10종 하나는 곧 제10 원융구덕종이니, 여러 종에서 겨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규봉이 “10종이 모두 부처님이 입멸하신 이후에 부처님 경전을 널리 현양하였으되, 계승하여 익힌 것이 각각 달라서 마침내 각기 한 종이 되었다.”<sup>49)</sup>라고 하였다.

49) 宗密 述, 『圓覺經大疏』卷1(X, 9,860c)이다.

## 2) 힐난을 풀어서 회통하다[釋通妨難]

### (1) 통합과 국한이 다르다[通局不同]

#### ① (교와 종) 둘이 통합을 드러내 밝히다[顯明二通]

[374a02] 疏教則一經容有多教下, 若圭山『大疏』云: “謂一宗容有多教, 一教<sup>50)</sup>容有多宗故. 又教約佛意權實有殊, 宗約人心所向差別.” 然此二義料揀, 與今不同. 初則直以宗教對論, 寬狹不同, 今『疏』以宗教就經, 說寬狹也. 次約佛意人心亦不同, 今次段約位所向也. 言若局判下, 正是吾宗判教之意. 唯此義故, 勝於餘師. 今有指於一經一部, 以爲此是始 此是終等者, 所失多矣.

○소, 교는 한 경에 여러 교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아래는 규봉의 『원각경대소』<sup>51)</sup>의 경우라면 “말하자면 한 종에 여러 교가 포함돼 있고 한 교에 여러 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며, 또 교(教)는 불교의 의미에 권실(權實)의 차이가 있음을 기준잡고, 종(宗)은 사람의 마음에 존송하는 바가 차별됨을 기준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두 뜻을 분명하게 가려보면 지금과는 같지 않다. 처음 (단락)은 종(宗)과 교(教)를 직접 상대해서 관대함과 협소함이 같지 않음을 논했지만, 지금 『소』는 종(宗)과 교(教)로서 경전을 입각해서 관대함과 협소함을 설한 것이며, 다음 (단락)은 불교 의미와 사람 마음이 부동함을 준거했지만, 지금 다음 단락은 지위와 존송하는 바를 준거한 것이다. 만약 (하나의 경에 단) 국한해서 판단하여 (하나의 교로만 삼는다면 모든 대승을 억누르는 것이다) 아래는 바로 우리 종(=원융구덕종)에서 교판(教判)한 의미이다. 오직 이 뜻 때문에 다른 논사보다 수승한 것이니, 지금 어떤 자가 한 경전이나 한 부에 대해서 이것은 시교(始教)이며 이것은 종교(終教)라고 한다면 잃는 것이 많다.

[374a09] 鈔如一維摩等者, 明一部經通有五教故<sup>52)</sup>云通. 然『疏』中容有多者, 不必多故. 或<sup>53)</sup>一經有四教三教二教等. 『般若』等亦具五者, 學者多云, 『般若』但名空教, 應審此文, 具

50) 底本에는 “數”, 『圓覺經大疏』 및 『쌍계사본』 참조 수정.

51) 宗密 述, 『圓覺經大疏』 卷1(X, 9,323a)이다.

52)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53) 底本에는 “或故”, 『쌍계사본』 참조 ‘故或’으로 도치.

覽彼經，方知不唯空義，恐招謗法之愆<sup>54</sup>。而影出宗局者，如『維摩經』多明理事無礙，以斯爲主，是所尚故，但名理事無礙宗。言顯明宗通下，以一宗通多經故通，而影出教局者，一經之中所有五教等義，各互不相通故局也。問：餘經可爾，『華嚴』一經具五教之義，爲互通？不互通？通則違此文，不通則違前疏云：“斯則有所通，無其所局。”答：此且論餘宗，不說『華嚴』，若說『華嚴』，約遮詮則非通非局，約表詮則通局無礙，故云圓融具德也。前云無其所局，且約遮也<sup>55</sup>。

○초, 저 『유마경』 하나에는 (5교를 갖추고 있으며) 등은 한 부 경전에 5교가 통틀어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통’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소』에서 “여럿이 포함돼 있다”라고 한 것은 꼭 여럿이진 않기 때문이니, 혹은 한 경전에 4교, 3교, 2교 등이 있다. 『반야경』 등도 5교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학자들 대다수가 『반야경』을 단지 공교(空敎)라고만 하지만 이 글을 살펴보고 그 경전을 자세히 열람하면 금방 공(空)의 뜻뿐만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니, 법을 비방하는 허물을 초래할까 염려스럽다. 그리고 종이 국한됨을 영략해서 나타냈다는 것은 『유마경』에서 대부분 이사무애를 밝혔으므로 이로써 위주를 삼고, 이것이 숭상 대상이기 때문에 다만 ‘이사무애종’이라고 한 것과 같다. 종취는 통함을 드러내어 밝혔다는 한 아래는 한 종이 여러 경전에 통하므로 통함이고, 교리는 국한됨을 영략해서 나타냈다는 것은 한 경전 중에 있는 5교의 뜻이 각각 서로 불통하기 때문에 국한된 것이다. 묻는다. 다른 경전은 그렇지만 『화엄경』 하나는 5교의 뜻을 갖추었으니 서로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 통한다면 이 글과 어긋나고, 통하지 않는다면 앞의 『소』에서 “이 경전은 통하는 바가 있고 국한됨이 없다”고 한 것과 어긋날 것이다. 답한다. 이것은 우선 다른 종을 논한 것이지 『화엄경』을 말한 것은 아니니, 『화엄경』을 말해본다면 차단하는 설명[遮詮]으로는 통하지도 않고 국한되지도 않으며, 드러내는 설명[表詮]으로는 공통됨과 국한됨이 무애하다. 그러므로 ‘원융구덕(종)’이라고 하는 것이니, 앞에서 국한되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은 차전을 기준한 것이다.

## ② 체식(體式)이 다름을 밝히다[明體式有異]

[374a22] 疏八輩者，四果四向也。

○소, 여덟 무리는 (수다윈,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과사향이다.

54) 底本에는 “[億-音+(天\*天)]”, 『쌍계사본』 “[億-音+(夫\*夫)]” 참조 “愆”으로 수정.

55) 底本에는 “他”, 『쌍계사본』 참조 수정.

[374a23] 鈔難云等者, 躡跡難也. 言宗不約此者, 宗不約此斷證以論, 斷證無多故教但有五. 問: 若斷證無多故但有五教者, 聲聞緣覺斷證階位各別, 何不分爲二<sup>56)</sup>教? 答: 斷煩惱障證生空理大同, 雖有位次小異, 相從合爲一教. 又緣覺出無佛世以無教, 故不別分也. 問: 破相始教說三乘同有十地, 與立相始教明資糧加行等, 五位及斷證等亦別, 何不分爲二教? 答: 同許定性無性皆不成佛, 亦許三乘斷證階位大同, 故合爲一教. 問: 終教所立時位等, 亦同法相, 何故別爲一教? 答: 伏斷惑障, 證理起行等, 多異故別爲一教. 問: 頓教何有斷證階位, 而別爲一教? 答: 以無位之位爲此教之位, 不同漸次, 不同圓融, 故別爲一教. 此上且爲成五教, 故作如是說. 若如前於大乘分爲七類等, 乃至如來聖教意趣無邊, 何須局執? 宗尚義別, 故有十宗. 前六宗所尚不同, 而『疏』但言前五者, 『疏』約第六一切我法但有假名而無實體, 通大乘義, 稍顯故言五. 『鈔』約前立在小乘故, 故云六宗而據斷惑證理等義, 六宗不離四果四向, 故合爲一小教, 則教與宗互不相違.

○초, 힐난해서 이르되 (각각 통합과 국한이 있다면 왜 종으로써 교를 삼거나 교로써 종을 삼지 않는가?)라는 것은 자취를 뒤밟아서 힐난한 것이다. 종(宗)은 이를 기준잡지 않았다는 말은 종은 이 단멸과 증득을 기준 잡아서 논하지 않았으니, 단멸과 증득에는 여럿이 없으므로 교에는 5교만 있을 뿐이다. 묻는다. 만약 단멸과 증득은 여럿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5교뿐이라고 한다면 성문과 연각도 단멸·증득의 계위가 각별한데 어째서 두 교로 나누지 않는가? 답한다. 번뇌장을 끊고 생공(生空)의 이치를 증득한 것은 대동하니, 비록 계위의 차제가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서로 따라서 한 교로 합한 것이다. 또 연각은 무불 세상에 출현하여 교리가 없으므로 별도로 나누지 않은 것이다. 묻는다. 파상시교(破相始教)에서 삼승이 똑같이 십지(十地)가 있다고 설했으니, 입상시교(立相始教)에서 자량위와 가행위 등 다섯 계위와 단멸과 증득 등을 밝힌 것과 역시 차별되는데, 어째서 두 교로 나누지 않는가? 답한다. 결정된 성품(定性)과 없는 성품(無性)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똑같이 허여했고, 삼승의 단멸과 증득의 계위가 대동하기 때문에 한 교로 합한 것이다. 묻는다. 종교(終教)에서 세운 시간과 지위 등이 법상종과 같은데, 무슨 까닭에 별도로 한 교로 삼았는가? 답한다. 번뇌장(惑障)을 절복시키고 단멸하는 것과 이치를 증득하고 수행을 일으키는 것 등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별도로 한 교로 삼은 것이다. 묻는다. 돈교에 무슨 단멸·증득의 지위가 있다고 별도로 한 교로 삼았는가? 답한다. 지위 없는 지위가 돈교의 지위이니, 점교의 차제와는 다르며 원교의 융합과도 다르므로 별도로 하나의 교로 삼은 것이다. 이상은 우선 5교를 이루기

56) 底本에는 없음, 『쌍계사본』 참조 보충.

위한 까닭에 이같이 섰지만, 만약 앞(10종)과 같이하면 대승에서는 7부류 등으로 나뉘고, 내지 여래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의미와 지취가 무변한데 어찌 국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존승한 뜻이 차이 났기 때문에 10종이 있는 것이다. 앞의 6종이 존승하는 바가 다른데도 『소』에서 다만 앞의 5종이라고 말한 것은 『소』에서는 제6종은 일체 아(我)와 법(法)이 가명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고 하였으니 교체가 대승에 통한다. 뜻이 조금 드러나기 때문에 5종이라고 하였고, 『초』에서는 전에 세운 것이 소승에 있었기 때문에 6종이라고 한 것이다. 미혹을 단하고 이치를 증득하는 등의 뜻에 근거한다면 6종이 사과사향(四果四向)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의 소승교로 삼은 것이다. 교와 종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 III. 맺음말

이상 『화엄현담회현기』 제37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화엄현담』의 제6장 종취의 통합과 국한됨을 수문 해설한 것이다. 정관은 여기서 96종의 외도를 11종으로 만들고, 다시 11종을 네 가지 견해를 이루는 등의 모든 과정을 통해 불법의 공능(功能)이 외도 중에 깊은 것보다 더 뛰어난을 밝혔고, 위 번역문을 통해 이렇게 불교 내에서도 10종으로 순서 짓는 이유를 각 종과의 교리의 얕음과 깊음을 비교 분석하면서 완성하고 있다. 특히 공(空)과 공성(空性)에 대한 개념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저 공일 뿐이고 또다시 없다고 하는 단공(但空)의 주장에 대해선 진공(眞空)이지만 항상 수연(隨緣)이라는 것으로써 상대하여 그 깊이의 차이를 이끌었고, 또 아공(=생공)만을 주장하느냐, 법공(法空)까지 주장하느냐, 둘 다 공이라고 하는 구공(俱空)을 주장하느냐로 분석하여 공성의 층위에 관한 이해도를 따라 그 종취의 깊이가 달랐음을 드러내었다. 또 오위백법(五位百法)으로써 마음을 세밀하게 분석한 상종(相宗)에 상대해선 일체 현상이 다 공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공종(空宗)의 논리를 드러냄으로써 그 깊이의 차이를 구분하였고, 다시 진여가 지닌 두 가지 측면 즉, 결정코 변하지 않는 측면(不變)과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을 따라 현상을 이루는 측면(隨緣) 가운데, 불변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공종에 상대해선 불변과 수연이 서로 여의지 않는 성질임을 밝힌 성종의 논리를 드러냄으로써 점점 더 그 깊이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또 마음을 삼성(三性)으로 분석하면서, 마음이 밖의 경계에 대해 두루 분별하면서 점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과 자체의 성질은 없고 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의타기성(依他起性)

과 마음은 본디 원만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하는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삼성을 각각 별개로 보느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파악하느냐, 본래 의타기성의 청정한 모습이 원성실성이며 오염된 측면이 변계소집성일 뿐, 셋은 하나임을 강조하느냐 등등이 삼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상종, 공종, 성종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전개 방식을 통해 자연스레 10종 가운데 앞의 종일수록 뒤의 종보다 종취가 더 얕음을 드러내었고, 5교 가운데 뒤의 교일수록 종취가 더 깊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역주 역시 그 과정 중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화엄종을 별종으로 분리하고 그 의리의 분한(分限)을 분석한 글을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비교분석을 통해 화엄종이 왜 제5 원교이며, 제10 원융구덕종(圓融具德宗)에 자리하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회현기』 역시 위 역주 글에서 보이듯이 세밀한 분석을 보탬으로써 『화엄현담』의 후대 주석서 중 전방위적 입지를 갖춘 자신의 가치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 원전

- 實叉難陀 譯, 『大方廣佛華嚴經』(T. 10)  
僧伽婆羅 譯, 『文殊師利問經』卷1(T. 14)  
實叉難陀 譯, 『大乘入楞伽經』卷3(T. 16,503a)  
澄觀 述, 『華嚴經隨疏演義鈔』(T. 36)  
普瑞 述, 『華嚴經懸談會玄記』(X. 8,90a~)  
\_\_\_\_\_, 『華嚴經懸談會玄記』 권 제37 (1695년 쌍계사간행본)  
宗密 述, 『圓覺經大疏』卷1(X. 9, 323a)  
窺基 撰, 『成唯識論述記』卷2(T. 43,267a16)  
\_\_\_\_\_, 『大乘百法明門論解』卷上(T. 44,46c15)  
\_\_\_\_\_, 『因明入正理論疏』卷中(T. 44,115a)  
法藏 述, 『探玄記』卷1(T. 35,116b20)  
\_\_\_\_\_, 『教義分齊章』卷1(T. 45,481a)  
龍樹 述, 『中論』「觀四諦品」卷24(T. 30,33b15)  
清辯 造, 玄奘 譯, 『大乘掌珍論』(T. 30,268a)  
『金光明經鈔』  
玄奘 述, 『大唐西域記』卷10(T. 51,930c28)

## 논문, 저서류

- 鮮演 述, 박은영(지현) 역주. 2022. 『화엄경담현결택기』1. 서울: 조계종출판사.  
유일 술,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華嚴清涼疏鈔懸談記』遺忘記(天字~荒字卷). 서울: 해조음.  
\_\_\_\_\_, 2013. 『華嚴經玄談重玄記』ABC불교기록문화유산(집성·편찬자료집 1).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징관 술, 실상사 화엄학림 편역. 2003. 『華嚴經玄談』下卷. 서울: 조계종출판사.  
징관 지음, 관허 수진 옮김. 2020. 『청량국사화엄경소초』10권(『화엄현담』) 서울: 운주사.  
징관 저, 서용 반산 역주. 2018-2020. 『華嚴經清涼疏』34권, 서울: 담앤북스.

## 인터넷 검색시스템

① <https://cbetaonline.dila.edu.tw/zh/X0236>

② The SAT Daizōkyō Text Database (<https://21dzk.l.u-tokyo.ac.jp/SAT/index>)